

[일련번호 : 10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♡♡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♡♡동은 「주민등록법」 및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주민등록법」 제27조(주민등록증의 재발급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(주민등록의 재발급)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[별지 제32호]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,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17조(수수료)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명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(주민등록증의 재발급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☞☞동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무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분실로 간주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수수료 부과를 누락하였고, 주민등록증 분실한 경우임에도 수수료를 무료로 처리하거나 수입증지 발행을 누락하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하여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.

[표]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소홀 내역

연번	대상자	생년월일	재발급 신청일자	수수료		부적정내역
				재발급 사유	수수료 징수	
1			240405	그 밖의사유 보안기능추가	무료	기존증 미반납, 부과누락
2			240404	성명변경	무료	기존증 미반납, 부과누락
3			240229	주소변경칸 부족	무료	기존증 미회수
4			231017	주민등록번호 변경	무료	기존증 미회수
5			230818	그 밖의사유 보안기능추가	무료	기존증 미반납, 부과누락
6			221014	분실	무료	미부과
7			221005	분실	증지없음	미부과
8			220906	분실	무료	미부과
9			220901	주민등록번호 변경	무료	기존증 미회수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☞☞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☞☞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